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분양상담전화(☎1833-2521) 및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세대내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2조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 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 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xi.co.kr/YYH)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 안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1순위 (해당/기타)	일반2순위			
일 정	2023.10.23.(월)	2023.10.24.(화)	2023.10.25.(수)	2023.11.02.(목)	2023.11.09.(목) ~ 11.(토)	2023.11.15.(수) ~ 17.(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9] ※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 15297호 (2023.10.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중 일반분양 212세대 (조합원 공급 227세대, 보류지 4세대, 임대 40세대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특별공급 97세대(일반[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34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5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431	01	049.9619A	49A	49.9619	24.2939	74.2558	49.1318	123.3876	31.2697	11	1	1	1	-	1	4	7	1
		02	049.9834B	49B	49.9834	24.0109	73.9943	49.1530	123.1473	31.1595	15	1	1	2	-	2	6	9	1
		03	049.9795C	49C	49.9795	24.7318	74.7113	49.1492	123.8605	31.4615	15	1	1	2	-	2	6	9	1
		04	059.9871A	59A	59.9871	23.0211	83.0082	58.9906	141.9988	34.9553	95	9	9	17	2	9	46	49	8
		05	059.9775B	59B	59.9775	23.2578	83.2353	58.9811	142.2164	35.0510	54	5	5	9	1	5	25	29	4
		06	059.9707C	59C	59.9707	22.8818	82.8525	58.9744	141.8269	34.8898	20	2	2	3	-	2	9	11	2
		07	073.9527B	73B	73.9527	23.3617	97.3144	72.7241	170.0385	40.9798	2	-	-	-	-	1	1	1	2
합계											212	19	19	34	3	22	97	115	19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의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공급 세대수	동호구분	구분(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1차	2차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2023.12.15	2024.03.25.	2024.06.24.	2024.09.24.	2025.02.24.	2025.07.24.	2025.12.24.		
49A	11	105동 1호	1층	1	199,560,000	299,340,000	498,900,000	10,000,000	3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49,890,000	149,670,000
			2층	1	200,640,000	300,960,000	501,600,000	10,000,000	40,160,000	50,160,000	50,160,000	50,160,000	50,160,000	50,160,000	50,160,000	50,160,000	150,480,000
			3층	1	206,720,000	310,080,000	516,800,000	10,000,000	4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155,040,000
			4층	1	209,320,000	313,980,000	523,300,000	10,000,000	4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52,330,000	156,990,000
			5~9층	5	213,880,000	320,820,000	534,700,000	10,000,000	4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160,410,000
			10층 이상	2	216,240,000	324,360,000	540,600,000	10,000,000	4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54,060,000	162,180,000
49B	15	105동 2호	1층	1	198,840,000	298,260,000	497,100,000	10,000,000	3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149,130,000
			2층	1	199,920,000	299,880,000	499,800,000	10,000,000	3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49,940,000
			3층	1	205,960,000	308,940,000	514,900,000	10,000,000	41,490,000	51,490,000	51,490,000	51,490,000	51,490,000	51,490,000	51,490,000	51,490,000	154,470,000
			4층	1	208,560,000	312,840,000	521,400,000	10,000,000	4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156,420,000
			5~9층	5	213,120,000	319,680,000	532,800,000	10,000,000	4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53,280,000	159,840,000
			10층 이상	6	215,480,000	323,220,000	538,700,000	10,000,000	4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53,870,000	161,610,000
49C	15	105동 3호	2층	1	198,080,000	297,120,000	495,200,000	10,000,000	3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49,520,000	148,560,000
			3층	1	205,200,000	307,800,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4층	1	207,760,000	311,640,000	519,400,000	10,000,000	4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5~9층	5	212,280,000	318,420,000	530,700,000	10,000,000	4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159,210,000
			10~19층	6	214,640,000	321,960,000	536,600,000	10,000,000	4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160,980,000
			20층 이상	1	217,440,000	326,160,000	543,600,000	10,000,000	4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163,080,000
59A	95	102동 1,2,5,6호 103동 1,2호 104동 4,5호	1층	1	246,480,000	369,720,000	616,200,000	10,000,000	5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61,620,000	184,860,000
			2층	8	253,360,000	380,040,000	633,400,000	10,000,000	53,340,000	63,340,000	63,340,000	63,340,000	63,340,000	63,340,000	63,340,000	63,340,000	190,020,000
			3층	8	261,000,000	391,500,000	652,500,000	10,000,000	5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65,250,000	195,750,000
			4층	8	264,320,000	396,480,000	660,800,000	10,000,000	5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198,240,000
			5~9층	28	270,040,000	405,060,000	675,100,000	10,000,000	57,510,000	67,510,000	67,510,000	67,510,000	67,510,000	67,510,000	67,510,000	67,510,000	202,530,000
			10~19층	38	273,080,000	409,620,000	682,700,000	10,000,000	58,270,000	68,270,000	68,270,000	68,270,000	68,270,000	68,270,000	68,270,000	68,270,000	204,810,000
			20층 이상	4	276,640,000	414,960,000	691,600,000	10,000,000	59,160,000	69,160,000	69,160,000	69,160,000	69,160,000	69,160,000	69,160,000	69,160,000	207,480,000
59B	54	101동 2,3호 102동 3,4호	2층	4	254,800,000	382,200,000	637,000,000	10,000,000	5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3층	4	262,520,000	393,780,000	656,300,000	10,000,000	5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196,890,000
			4층	4	265,800,000	398,700,000	664,500,000	10,000,000	5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66,450,000	199,350,000
			5~9층	14	271,600,000	407,400,000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10~19층	20	274,640,000	411,960,000	686,600,000	10,000,000	58,660,000	68,660,000	68,660,000	68,660,000	68,660,000	68,660,000	68,660,000	68,660,000	205,980,000
			20층 이상	8	278,200,000	417,300,000	695,500,000	10,000,000	5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69,550,000	208,650,000

주택형 (약식)	공급 세대수	동호구분	구분(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1차	2차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2023.12.15	2024.03.25.	2024.06.24.	2024.09.24.	2025.02.24.	2025.07.24.	2025.12.24.	
59C	20	101동 1,4호	2층	2	253,120,000	379,680,000	632,800,000	10,000,000	53,280,000	63,280,000	63,280,000	63,280,000	63,280,000	63,280,000	63,280,000	189,840,000
			3층	2	260,800,000	391,200,000	652,000,000	10,000,000	5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4층	2	264,080,000	396,120,000	660,200,000	10,000,000	56,020,000	66,020,000	66,020,000	66,020,000	66,020,000	66,020,000	66,020,000	198,060,000
			5~9층	8	269,800,000	404,700,000	674,500,000	10,000,000	57,450,000	67,450,000	67,450,000	67,450,000	67,450,000	67,450,000	67,450,000	202,350,000
			10층 이상	6	272,840,000	409,260,000	682,100,000	10,000,000	5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204,630,000
73B	2	104동 2,3호	3층	1	297,520,000	446,280,000	743,800,000	10,000,000	6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74,380,000	223,140,000	
			4층	1	299,400,000	449,100,000	748,500,000	10,000,000	64,850,000	74,850,000	74,850,000	74,850,000	74,850,000	74,850,000	224,550,000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 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용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공급금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원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합니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 예정 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 예정 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약식표기]		49A	49B	49C	59A	59B	59C	73B	합계
일반(기관추천)	장애인	경기도	1	-	-	2	1	-	4
		서울특별시	-	1	-	1	1	-	3
		인천광역시	-	-	1	1	-	-	2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	2	1	1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1	1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1	-	-	2

	중소기업 근로자	-	-	-	1	-	-	-	1
	소계	1	1	1	9	5	2	0	1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1	1	1	5	3	1	-	12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 (50%)	-	-	-	4	2	1	-	7
	소계	1	1	1	9	5	2	0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1	2	2	17	9	3	-	34
	생애 최초 특별공급	1	2	2	9	5	2	1	2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1	-	-	3
	합 계	4	6	6	46	25	9	1	9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현장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자격요건 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당첨 및 계약불가] - 추천기관 						
	신청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해당기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거 '추천대상자'로 사업주체에 선정·통보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로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시 당첨자로 확정합니다. (단,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현황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로 결격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예비대상자 유의사항 : 추천기관에서 선정·추천된 '예비대상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대상 세대 중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미달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순]

구분	내용						
신청자격	<p>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서류 확인 시점 </p> <table border="1" data-bbox="241 646 2152 734">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2023.10.13</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p>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당첨자 선정방법	<p> ■ 당첨자 선정기준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천]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p>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 120% 이하	6,509,453원 ~ 7,811,342원	7,622,057원 ~ 9,146,467원	8,040,493원 ~ 9,648,590원	8,701,640원 ~ 10,441,967원	9,362,787원 ~ 11,235,343원	10,023,934원 ~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40%이하	6,509,453원 ~ 9,113,233원	7,622,057원 ~ 10,670,878원	8,040,493원 ~ 11,256,689원	8,701,640원 ~ 12,182,295원	9,362,787원 ~ 13,107,900원	10,023,934원 ~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60%이하	7,811,343원 ~ 10,415,123원	9,146,468원 ~ 12,195,290원	9,648,591원 ~ 12,864,787원	10,441,968원 ~ 13,922,622원	11,235,344원 ~ 14,980,458원	12,028,721원 ~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내 3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table border="1" data-bbox="241 676 2152 75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33%;">입주자모집공고일</th> <th style="width: 33%;">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 <th style="width: 33%;">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10.13</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0.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 10,415,123원	9,908,674원 ~ 12,195,290원	10,452,641원 ~ 12,864,787원	11,312,132원 ~ 13,922,622원	12,171,623원 ~ 14,980,458원	13,031,114원 ~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 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추첨제 100% 적용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전용면적)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p>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공급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이상 ~ 1년미만	2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1년이상 ~ 2년미만	3	9년이상 ~ 10년미만	11	
		2년이상 ~ 3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12	
		3년이상 ~ 4년미만	5	11년이상 ~ 12년미만	13	
		4년이상 ~ 5년미만	6	12년이상 ~ 13년미만	14	
		5년이상 ~ 6년미만	7	13년이상 ~ 14년미만	15	
		6년이상 ~ 7년미만	8	14년이상 ~ 15년미만	16	
		7년이상 ~ 8년미만	9	15년이상	17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IV 청약일정, 신청방법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또는 ⑤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0.23.(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 견본주택(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9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3.10.2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10.25.(수)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또는 ⑤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 방문청약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일반 공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1.02.(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서류검수 일정 및 동·호 추첨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모바일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3.11.02.(목) ~ 2023.11.11.(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td> </tr> <tr> <td>제공일시</td> <td>- 2023.11.02.(목) 오전 08시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td> </tr> </table>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3.11.02.(목) 오전 08시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3.11.02.(목) 오전 08시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 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표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홈페이지(<https://xi.co.kr/YYH>)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표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 초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023.11.09.(목) ~ 2023.11.11.(토)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견본주택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9번지 (☎ 1833-2521)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일반공급	별도 통보 예정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을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당사 홈페이지(<https://xi.co.kr/YYH>)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통),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세대원	•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 청약 시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청약신청자가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 소유 현황	본인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증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 상기 제 증명서류(신청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정보취약자(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의 견본주택 방문청약시 상기 해당 접수유형별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자	제출할 수 없는 자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인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건분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1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이상(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가점제 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합니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3.11.15.(수) ~2023.11.17.(금) 10:00 ~ 17:00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9번지)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본인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 (홈페이지 서식 게시)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		인지세 납부 확인서	본인	• https://www.e-revenuestamp.or.kr ,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사본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 라 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46-37904	화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II, 가전옵션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또는 전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주택홍보관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범위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정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용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Ⅷ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II],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 주체에 따라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II], [가전옵션] 선택품목으로 구분되며, 납부 계좌도 상이하오니 계약 및 입금 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비고
			계약 시	2024.03.25	입주지정일	
발코니확장 비용	49A	13,600,000	1,360,000	2,720,000	9,520,000	-

	49B	8,800,000	880,000	1,760,000	6,160,000	-
	49C	13,900,000	1,390,000	2,780,000	9,730,000	-
	59A	15,900,000	1,590,000	3,180,000	11,130,000	-
	59B	16,600,000	1,660,000	3,320,000	11,620,000	-
	59C	16,600,000	1,660,000	3,320,000	11,620,000	-
	73B	17,900,000	1,790,000	3,580,000	12,530,000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화창지구재개발사업조합)와 시공사[지에스건설(주)] 간 기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발코니확장은 지에스건설(주)가 시공하며, 발코니확장은 사업주체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시공하므로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주체가 상이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옵션Ⅱ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건축 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형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 [발코니]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계좌		납부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발코니확장	KB국민은행	계약금	006001-04-340932	지에스건설(주)	계약 시	2024.03.25.
		중도금, 잔금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플러스옵션Ⅱ 납부계좌, 가전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계좌는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옵션II 품목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II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II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벽마감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유럽산 포셀린타일 • 시트판넬 벽체						
구분	49A	49B	49C	59A	59B	59C	73B
공급대금	2,620,000	1,920,000	2,080,000	2,700,000	2,130,000	2,500,000	2,30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조명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우물천장 2면 간접등 • 특화조명 • 단천장 및 리니어조명						
구분	49A	49B	49C	59A	59B	59C	73B
공급대금	940,000	800,000	1,260,000	840,000	1,380,000	850,000	1,53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 49㎡A, 49㎡B, 59㎡A, 59㎡C타입은 단천장 및 리니어조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유럽산 포셀린타일 • 비데 일체형 양변기						
구분	49A	49B	49C	59A	59B	59C	73B
공급대금	1,550,000	1,550,000	1,550,000	2,640,000	2,640,000	2,640,000	2,66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주방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내역	• 전동식 플랩장 • 독립형 렌지후드(하츠) • 유럽산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 •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특화조명 • 다용도실 하부장 • 주방TV(13인치) • 쿡탑							
구분	49A	49B	49C	59A	59B	59C	73B	
선택1	3구 하이브리드 쿡탑	7,350,000	8,260,000	9,150,000	10,070,000	9,950,000	11,080,000	10,030,000
선택2	3구 인덕션 쿡탑	7,660,000	8,570,000	9,460,000	10,380,000	10,260,000	11,390,000	10,340,000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 49㎡B, 49㎡C, 59㎡B, 73㎡B타입은 주방 Style Up 선택시 주방 우물천장이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거실 우물천장이 연장됩니다.
- ※ 49㎡A, 49㎡B, 49㎡C, 59㎡A타입은 다용도실 하부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별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49A	49B	49C	59A	59B	59C	73B
현관 중문	3연동 자동	2,090,000	2,090,000	-	2,090,000	2,090,000	-	2,090,000
	SWING(여닫이형)	-	-	1,650,000	-	-	1,650,000	-
침실2 또는 침실3 불박이장		1,280,000	1,280,000	1,280,000	1,280,000	1,280,000	1,280,000	1,280,000
냉장고장(키큰장) 수납특화		1,700,000	1,700,000	1,7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630,000
전동 커튼레일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20,000	1,250,000
복도 장식장		-	-	-	-	-	-	790,000
드레스룸 및 화장대		-	-	-	-	-	-	920,000
아일랜드 일체형 식탁 (주방 Style Up 선택 세대에 한함)		-	-	750,000	-	880,000	-	970,000
히든도어 (벽가감 Style Up 선택 세대에 한함)		2,580,000	2,580,000	2,580,000	3,450,000	3,450,000	3,450,000	3,450,000

-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 침실 불박이장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냉장고장(키큰장) 수납특화 선택시 인출식 서랍 키큰장이 제공되며, 73㎡B타입은 인출망장형 서랍장이 추가 제공됩니다.
- ※ 드레스룸 및 화장대 옵션 선택 시 부부욕실 출입문 방향이 변경됩니다.

바닥 마감								
구분		49A	49B	49C	59A	59B	59C	73B
선택1	유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 원목마루(침실)	3,510,000	3,220,000	3,510,000	4,560,000	4,420,000	4,480,000	5,360,000
선택2	원목마루	4,450,000	4,040,000	4,420,000	5,740,000	5,630,000	5,650,000	6,750,000

-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YYH>)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II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계좌				납부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플러스옵션 II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06001-04-340945	지에스건설(주)	계약시	2024.03.25.	입주시정기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부여(가상계좌)			
--	---------	------------------------------	--	--	--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플러스옵션II 납부계좌, 가전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계좌는 플러스옵션II 납부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전옵션 품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49㎡A,B,C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400,000	LG전자	-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660,000		-
59㎡A,B,C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560,000		-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1개소)	4,750,000		-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110,000		-
73㎡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570,000		-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1개소)	4,930,000		-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580,000		-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 안방에 기본 설치되는 냉매매립배관은 천정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템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49㎡A,B,C	선택1	2대	거실, 주방	1,840,000	자이에스앤디(주)	-
	선택2	2대	거실, 침실1	1,700,000		-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선택3	3대	거실, 주방, 침실1	2,620,000		-
	선택4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3,400,000		-
59㎡A,B,C 73㎡B	선택1	2대	거실, 주방	1,840,000		-
	선택2	2대	거실, 침실1	1,700,000		-
	선택3	3대	거실, 주방, 침실1	2,620,000		-
	선택4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180,000		-

702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사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선택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S715SI24B	5,750,000	홈바형
			S695SI34B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
	오브제 냉장고		BC4S1AA1 + BC3K1AA1	5,800,000	냉장, 냉동, 김치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
	식기세척기		DIB22S	1,100,000	가구부착형
			DUB22SB2	1,100,000	도어일체형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 중 일부는 타입에 따라 선택이 불가합니다.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추가선택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전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옵션 납부계좌	신한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부여(가상계좌)	자이에스앤디(주)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플러스오피스II 납부계좌, 가전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선택 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추가선택 품목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타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타로그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IX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정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화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 2023년 8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변경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는 종교시설용지(계획)로 조합에서 변경 추진중이며 교회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조합이 추진중인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의 종교시설용지(계획)로 변경은 향후 조합의 인·허가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인·허가 변경업무는 조합의 업무 범위가기에 시공사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9년 03월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서쪽에는 화창로92번길, 남쪽에는 양화로217번길, 동쪽에는양화로, 북쪽에는 화창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단지 주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면적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기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화창초등학교, 충훈터널, 교회, 어린이집, 어린이공원(기부채납, 계획), 영풍아파트, 석천 약수터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안양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세대의 초등학교 및 중학생은 급격한 수용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학교(화창초등학교 배정 및 만안중학교 내)에 수용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학군은 만안중학교에 해당합니다. - 고등학교 학군은 안양권1구역에 해당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 배정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쪽에는 발전기용 급배기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차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벌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 104, 105동 세대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아너스클럽(경로당), 관리사무소, 클럽자이안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옥외 공간에 대하여 인접 세대는 해당 공간을 점용하거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104동 일부 세대에서는 대지 단차로 인해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일부 세대에서는 교회(존치)로 인해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총별, 동별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3, 104, 105동의 세대 전후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북서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 계획)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은 임대세대가 배치 되어있고 동 출입구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 105동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Elev.홀은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방화구획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난층인 지하1층, 1층 제외) • 105동 49㎡C 타입은 인접한 동에 의해 일부 조망이 간섭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클럽자이안및 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설계변경,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선형,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실외기와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실외기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계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공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2동, 103동 지하 1층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권 침해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테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테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엔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외관
계획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디자인,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정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현장 여건,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금속, 석재붙칠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민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 주변 옹벽은 본 홍보물 상의 이미지 및 견본주택 모형과 달리 인·허가 조건, 설계변경,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선형,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p>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부 및 지상 저층부 주변으로 LED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상가용 설비가 외부 또는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옥상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물(사다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 및 공간에서 미관의 저해와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 및 외벽장식물의 형태와 크기, 위치, 색채,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아너스클럽(경로당) 등 부대시설과 상가의 외부는 석재, 벽돌, 타일, 금속 등 기타자재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문주 주변 옹벽은 본 홍보물 상의 이미지 및 견본주택 모형과 달리 인·허가 조건, 설계변경,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선형,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공용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클럽자이안,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LUB XIAN[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아너스클럽(경로당), 어린이집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 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총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는 총 3개소(101동 북동쪽, 102동과 103동 사이 보행출입구 배면, 104동과 105동 사이 화창한 교회, 어린이집 부지 옆)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클럽자이안은 데크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스쿨버스존(보호차대기소)의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창고는 세대당 1개소씩 제공되며, 세대창고의 배분,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세대창고 위치는 입주자 거주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용역원 휴게실은 105동 데크층 홀 인근에 위치합니다.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팬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환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632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635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주차 주차구획,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와 기계실, 환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 ~ 지하 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3대, 완속10대, 콘센트형 충전기 60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층(지하1층)의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면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단지 및 주차장 출입구를 함께 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3동 남쪽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면은 지하 1층 103동에 인접하여 계획되었으며 독립된 근생용 출입구가 주차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창고, 비화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실,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다용도실 도어 개폐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p>- 부엌 쪽으로 당김 : 49㎡A, 49㎡C, 59㎡A, 59㎡B, 59㎡C, 73㎡A, 73㎡B - 다용도실 쪽으로 밌 : 49㎡B, 84㎡A, 84㎡B</p>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측벽을 통한 인접세대 피난구조(59A, 59B, 73B, 84B)와 하향식 피난구 설치(59C, 73A, 84A)가 혼합되어 있으니 실외기를 제외한 피난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실외기실에 배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9타입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 또는 측벽을 통한 인접세대 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피공간 설치 예외조항 충족, 직통계단 2개소 이상)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과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9㎡B 타입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은 유리난간의 파손우려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 철재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사양(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에 적용된 시스템 창호는 제품 특성상 외창중 한쪽이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방관·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바닥타일은 균열, 파손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해 모델하우스 타일나누기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업옵션 및 유상, 무상 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인) 히든도어는 타입별 적용부위가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옹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49㎡A 욕실 전등 스위치는 주방벽면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화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또는 세대 실외기실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일부층에 루프 배관 등으로 미관 저해 및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공간이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추가 선택품목 주방TV폰)은 거리, 음성엔진 인식범위, 주변소음, 전파방해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p>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전기쿡탑 적용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주방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장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옵션 선택 시 시스클라인 장비 본체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기본 제공하는 거실 센서는 제외됩니다. • 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위치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조기와 세탁기를 2단 설치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점검 또는 교체시 건조기와 세탁기 분리와 재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Way 전동커튼레일 옵션 선택 시, 레일과 모터, 전원과 통신장치가 설치됩니다. (커튼 미포함) • 1Way 전동커튼레일 옵션 미선택 시, 커튼박스에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Way 전동커튼레일 옵션 선택 시, 커튼모터의 최대 하중은 35kg(직선기준, 원단㎡당 1kg 미만 기준)입니다. •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59㎡A, 59㎡B 안방에 설치된 전자식 스위치는 추가선택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동커튼레일 추가선택 품목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미건립 평형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자식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거실에 창이 2개인 경우 전동 커튼레일 옵션 선택시 거실 큰창에만 전동 커튼레일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거실, 안방에 기본 설치되는 냉매매립배관은 천정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9㎡B타입 다용도실은 자연환기를 위한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환기를 위해 천장형 배기팬이 설치 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옵션에 적용되는 리니어조명은 조명기구 설치 후 조명박스 내 일부 빈공간이 발생할 경우 조명기구 모형을 사용하여 미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모형에는 전원이 투입되지 않고 설치 후에도 50mm내에서 빈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추가선택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선택 품목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조명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49, 59, 73,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A, B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59㎡A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뮌베이지스타일로, 59㎡B타입은 쿨그레이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마감자재는 유상 옵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마감자재 안내부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추가선택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선택 품목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X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입주예정일 : 2026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대복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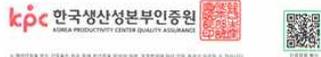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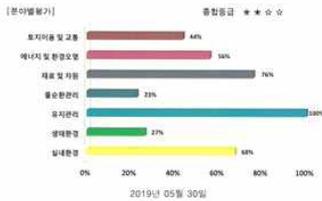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아너스클럽(경로당),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 ※ 부대시설 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집기는 카탈로그 및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홈페이지(<https://xi.co.kr/YYH>) 이미지에 구현된 것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 단지별로 시공되는 부대복리시설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홈페이지(<https://xi.co.kr/YYH>), 견본주택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안양 송당지구 주택개발사업 1차지구 안. 녹. 부. 0801지구 주택개발사업 1차지구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없음	인증번호: 제2019-0199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석산동 348번지 1동	[인증 등급]
층 수: 지상 1층, 지하 2층, 총 3층	인증등급: 부동등급(공통부동)
건축물의 주용 용도: 아파트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발주처: ㈜이우홀딩스(주)신원스	인증기준: 제2019.04.1호
	발급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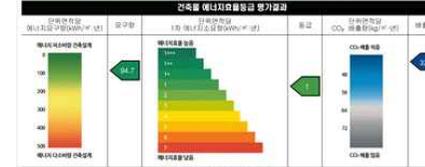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부동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정보
건축물명: 안양 송당지구 주택개발사업 1차지구 인증번호: 19-0199-01-0447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없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석산동 348번지 1동 층 수: 지상1층 / 지하2층 면적: 4807.08(㎡) 건축물의 주용 용도: 공동주택 발주처: ㈜이우홀딩스(주)신원스	인증번호: 19-0199-01-0447 발급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기준: 한국에너지인증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1등급



에너지 성능 평가결과

구분	에너지소비효율 (2019년 기준)	실용에너지소비량 (kWh/㎡·년)	CO2 배출량 (kg/㎡·년)
년별	0.0	0.0	0.0
난방	90.2	90.4	19.2
급탕	92.7	95.3	7.2
냉방	12.8	10.8	2.9
환기		3.0	0.3
합계	94.7	141.7	32.9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4월 16일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장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구 분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3-101-0003200 호	₩ 95,882,29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 호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세종종합기술(주)	(주)지여이앤씨	(주)지여이앤씨
금 액	1,926,859,000원	534,532,748원	297,000,000원	195,25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자	화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59, 301호(석수동)	134171-0004191
시공회사	지에스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110111-0002694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건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도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9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
- 홈페이지 주소 :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https://www.xi.co.kr/YYH>)
- 분양문의 : 1833-252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